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 8. 23 선고 2021가단7848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7. 5.

판 결 선 고 2022. 8. 23.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11. 27. 체결된 매수자금 증여계약을 8,280,13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80,1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8,280,1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딸이고, D는 C의 언니이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2016. 8. 2.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 17. E으로부터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아 2020. 1. 17. C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334088)을 제기하였고, 2020. 6. 10. 'C은 원고에게 6,196,872원 및 그 중 4,870,257원에 대하여 2020. 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21. 6. 30. 기준으로 원고의 채권액은 합계 8,280,137원이다.

라. D는 2017. 11.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는 C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채권액인 8,280,137원의 한도 내에서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으로서 8,280,137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C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는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지급받아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명의신탁자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8,280,1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대금을 증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주위적 청구는 나아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선중

별지